

#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과 참여소득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정윤수(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1. 서론
2. 기존 지원정책의 한계와 참여소득의 가능성
  - 2.1. 기존 예술인 지원정책의 한계
  - 2.2. 참여소득의 개념과 의의
  - 2.3. 예술인의 사회적 참여와 가치
3. 참여소득 성격의 사업과 정책
  - 3.1. 문화도시 사업과 참여소득
  - 3.2. 예술인 지원정책과 참여소득
4.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과 예술노동의 재인식
  - 4.1.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
  - 4.2. 예술노동과 참여소득
5. 결론 :한계와 제언

---

이 연구는 새로운 예술인 지원정책의 하나로 참여소득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참여소득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이며 그 개념 및 현실화 가능성을 위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소득과 예술인 지원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연구는 시론의 성격을 갖는다.

기존 지원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접촉을 전제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위기에 처해졌다.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서 긴급 지원정책을 구사하였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좀 더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월성 중심의 기존 공모 선정 지원정책은 관습적인 장르 분류, 제한된 작업 기간, 결과물 중심,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동에 따른 예술 개념의 변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 공적 예술 영역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작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참여소득의 개념과 의의에 주목하여 국가적 차원의 문화도시 사업, 각 지자체 및 일부 기관의 실험적인 예술인 지원사업을 검토하였다. 참여소득의 구체적인 정책과 방법에 있어 한계를 지닌 연구이지만 새로운 예술인 지원정책의 다양한 가능성 모색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일정한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한다.

---

주제어: 참여소득,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정책,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 1. 서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하여 예술계 전반에 걸쳐 기존의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전개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예술인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의 예술지원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인식조사를 전개 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2021년 12월 “변화하는 예술계 환경에 따른 동시대적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예술인의 다변화된 현

장 활동을 기반으로 예술, 예술인, 예술 활동의 새로운 정의와 기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6)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전 조사를 발판으로 하여 2022년 4월에는 예술인 지원 정책의 전환과 관련하여 ‘패러다임 전환 정책 제안’, ‘기후위기 예술정책 정책 제안’,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개 포럼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경로와 분야에서 기존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점검과 대안 모색이 전개되고 있거니와 이 연구는 이러한 예술인 지원정책의 새로운 전환에 있어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의 의의를 밝히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차차 상술하겠지만, 참여소득은 그 행위자가 교육·보육·돌봄·봉사 등 사회의 공적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 모형이다. 이 연구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 참여소득에서 강조하는 ‘사회의 공적 서비스’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예술인 지원정책 및 그 사업에서 참여소득과 관련하여 강조할 만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로써 2022년 상반기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에 있어 참여소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후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는 2022년 4월 현재 ‘위드 코로나’ 수준의 일상으로 차츰 회복되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코로나19 사태는 2년 여 동안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였고 무엇보다 대면 접촉을 전제로 하는 예술계, 그 중에서도 특히 대중음악의 공연 부분을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그 여파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경우, 기존 대면 공연 이외의 대응 방안을

채 준비하기도 전에 “실용음악 예술인들은 교육·예술 활동의 대폭 축소로 직접적인 생계가 위협되고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피해”(안영희·나진주, 2020:141)를 입었고 그 충격과는 2년 여 동안 지속되었다. 이는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문화예술계 특히 실용음악 예술인에게 불 안전망이 여실히 드러난 계기”(안영희·나진주, 2020:141)로 받아들여졌다.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대부분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불안’(78.8%)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창작 네트워크가 와해(54.0%)될 수도 있다고 응답자의 절반(하동균, 2021:28)이상이 답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과 제작 스태프 모두 2019년(코로나19 직전) 대비 2020년 말 활동(근로) 시간 및 소득이 감소”(한국콘텐츠진흥원, 2021:9)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임금 동결 및 삭감, 휴직, 무보수 활동, 공연 및 행사의 취소 또는 중단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그로부터 1년 여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었으므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창작 작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좌절 및 창작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은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위드 코로나’ 또는 실질적인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대중음악을 포함한 예술계가 자체 재생산이 가능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대중음악을 포함한 예술계는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는가.

특히 공적 지원 체계와 관련하여 볼 때 현재의 위기를 단지 코로

나19사태로 돌릴 수는 없다. 민간 영역의 풍성하고 다양한 지원문화가 미발달한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목적에 의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공예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생존을 지탱해왔다. 그런데 다양한 공공 예술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예산, 공정, 인원 등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세밀한 기획안, 다수의 서류, 심사와 선정, 작업 과정 상의 잦은 보고, 사후관리 등 한편 체계화되면서 한편 복잡하게”(정윤수, 2020:94) 전개되었다.

이렇게 행정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공공예술의 ‘공공성’이 사회적 가치의 추구하고 그 미적 실천보다는 재원과 행정과 관리로 치중된 점이 있다. 특정한 목적을 지닌 공공 사업의 경우 ‘단기·단발·외주·용역’ 성격이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공공 사업 외에는 달리 사회적 생존을 도모할 수 없는 예술인들은 이 구조의 하부에 ‘수직계열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모색은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그 시스템, 전문 행정, 창작 지원 전반에 걸쳐 건강한 재생산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인의 ‘지속적인 사회적 참여’에 대한 안정적인 현금 보상을 골자로 하는 참여소득은 연구해 볼 만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2. 기존 지원정책의 한계와 참여소득의 가능성

### 2.1. 기존 예술인 지원정책의 한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술인들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자금을 투여하였다. 2020년 6월 문체부는 3차 추경을 통한 3,399억 원으로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21년 5월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600명에게 7억 2천만 원의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 하반기에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총예산 272억 원 규모로 예술인 1만 5천 명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들의 목표는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sup>1)</sup>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연구의 관심사인 참여소득과 무관하지 않다.

공연예술 분야를 보면 문체부는 2020년의 3차 추경(288억 원, 3000명 규모)을 시작으로 2021년의 1차 추경(336억 원, 3500명 규모)과 2차 추경(115억 원, 2000명 규모)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중음악 분야로 범위를 좁혀 보면, 2022년 3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11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음악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 제작, 정보통신기술(ICT)-음악(뮤직테크) 제작,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등의 사업을 통해 45개 과제와 2천 명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특히 총 2,000 명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1인당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sup>2)</sup>하는 내용은, 이 연구의 주제인 참여소득과 연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2022년 4월, 대중음악 유관단체와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300석 이하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를 포함한 개인은 6개월간 주당 30시간의 공연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임금 월 180만 원을 받게 된다. 1,300여 팀의 약 330회에 달하는 대중음악

---

1) 문체부 보도자료, ‘2021 하반기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2021년 7월 26일

2)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2022대중음악 공연분야 인력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공연 개최를 지원하는 이 사업 역시 참여소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긴급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생존이 위협받는 예술인들에게 이러한 지원은 보다 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예술인 지원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19세기 산림경제 분야에서 처음 전개된 것으로 현대에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극심한 폐허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자 산림 분야를 넘어 경제와 환경과 생태의 영역으로, 그리고 지금은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확산되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보면, 최근 들어 사회적 실천의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행위자가 중시되고 있다. 공공적 사회 활동을 수행하여 해당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직접 실행하는 행위자(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중음악 예술인)의 사회적 생존과 안정적인 생활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다.

다시 이 연구와 관련하여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구조 변동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기존 예술 정책의 한계와 정책의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예술 정책의 전환이란 그 직접적인 행위 주체들의 사회적 생존과 작업 안정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예술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란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일방적이고 단기적으로 부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행위자, 즉 예술인들의 사회적 생존과 창작 작업의 안정화에 주목하되 그들의 사회적 생존이 가능할 때 피폐하여 사나워진 사회적 심성과

그 갈등을 치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창작 작업이 안정화될 때 사회 관계망 촉진과 문화안전망 구축 또한 형성될 수 있다는 공공적 판단이 중요하다.

문체부는 2018년에 수립한 <문화비전 2030>의 8대 핵심 과제에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재정비’을 포함시킨 적 있고 2021년 7월 경기도의회는 도내 예술인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술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그 핵심 요소가 행위자, 즉 예술인의 주체 형성 및 그 사회적 생존 조건 보장과 창작 작업의 안정화임을 말해준다.

대중음악과 관련하여 봐도 무대 안팎의 수많은 행위자, 즉 대중음악 예술인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주목하여 그들의 ‘사회적 생존과 창작 작업의 안정화’가 논의되는 것도 두루 확인된다. 이썬정석이 강조한 바와 같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음악적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이에 비해 저임금으로 공연이나 교육, 창작 활동 등의 음악 노동을 제공하거나 ‘음악저작물’을 값싸게”(이썬정석, 2016.171) 넘기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을 통한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형성과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술인 참여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2 참여소득의 개념과 의의

참여소득은 1996년 앤서니 앳킨슨(Anthony B. Atkinson)이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극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행위자의 사회적 참여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참여소득을 제안하였다. 참여소득은 그 개념과 정책화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일정하게 비판하면서 진화하였다. 참여소득은 공공 재원의 사회적 배분을 “월



급이나 직장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고, 사회 기여라는 보다 포용적인 개념”(옥동석, 2021:27)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건설적인 논의와 정치적 쟁점<sup>3)</sup>으로 확산되었다.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소득이나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또 어디에 쓰든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지급하는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닌)개인 지급,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현금 지급’이라는 6대 조건을 갖는다.

반면 참여소득은, 크게 보아 기본소득과 그 정책의 이념을 함께 하면서도 ‘참여’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방점을 찍는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 적절한 기본소득 보장으로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장려하고 만들어 내기 위한 공공의 개입”(이승윤·백승호, 2021:132)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은 공적 재원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기본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회적 유용성의 참여와 실현’이라는 뚜렷한 차이점을 갖는다.

엡킨슨 또한 처음 참여소득을 제안할 때 그것을 보편적 기본소득의 징검다리로 상정하였지만 그것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하고 정책화 과정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소득을 기본소득의 중간 기착지로서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엡킨슨은 참여의 의미를

---

3) 2021년 주요 정당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및 참여소득에 관한 논의를 전개되었다. 잘 알려진대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강조하였고 <정의당>은 이경미 후보가 참여소득을 주장하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1조 1항에서 기본소득을 명시하였다.

확장하였고 여러 학자들이 그것의 가치를 확산하면서 참여소득은 독자적인 범주와 정책 방향을 가진 개념이 되었다.

엡킨슨은 2015년도의 저작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존 롤스의 유명한 비유를 인용하면서 “말리부 해안에서 하루 종일 서핑하는 일들은 그들 스스로를 부양하는 길을 찾아야 하며 이들에게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존 롤스에게 동의”(엡킨슨, 2015:311)한다고 썼다. 엡킨슨은, 참여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생산 연령대에 있는 이들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돼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함으로써, 혹은 교육, 훈련,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집에서 유아기 어린이 또는 노약자들을 돌봄으로써, 그게 아니면 인정된 단체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엡킨슨, 2015:310)를 하는 것 등을 예시하였다.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핵심은 ‘소득’보다 ‘참여’에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 소통의 공간으로써 참여소득은 현재 경제, 사회 체제가 불러온 문제를 해결”(이상준, 2021:154~155)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엡킨슨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부합하는 주장으로 이는 기존의 ‘자본과 임노동의 고용 관계’에서 벗어난 다양한 사회적 참여 즉 돌봄, 육아, 지역공동체 부조, 자원봉사, 사회적 예술 활동 등으로 확장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관점에서도 참여소득의 이러한 개념을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인정하는 편이다. 물론 사회적 가치의 범주가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제 정책화 과정에서 임의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참여 행위’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행정 과정이 복잡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본소득과 “핵심 특징을 공유하는 유사 정책들을 토론하여 새로운 사회전환을 추동하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전략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이지은, 2020:13)가 있다고 본다.

조남경도 같은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핵심이 탈노동이라면, 탈노동의 단계적 전략으로서 참여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소득은 호혜적 상식에 부합하며 일과 노동윤리 관념의 단계적 변화를 꾀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권리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이론적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소득의 제안은 이러한 세 가지 전략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데 시사하는 점”(조남경, 2017:263)이 크다.

다시 말하여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돌봄, 육아, 지역공동체 부조, 자원봉사, 자격 공부, 예술 활동’ 등을 예시하는 것은 자기주장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정책화 과정에서 실증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 세계가 기존의 전형적인 임노동 관계에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의 결합 등에 주목하여 보면 설령 그것을 ‘참여소득’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체계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할 근거는 충분하다.

여기에 예술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예술의 개념과 범주의 변동,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실천, 공공 영역 안팎에서 두루 전개되고 있는 예술 행위,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청년 예술인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예술인의 사회적 참여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물론 예술 자체가 순수하고 고결하며 그 행위에도 소중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식으로 신비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은 예술가와 사회의 복잡한 관계맺기를 단순화할 우려가 있다. 예술가들이 스스로를 어떤 고결한 가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제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정도로 사회적 예술 활동을 축소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실천 또는 사회적 예술 활동을 왜곡할 수도 있다. 음악을 통한 사회 개혁 활동을 의미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 운동이 한국의 경우 재능기부와 기회 제공 차원의 약기 수련 정도로 축소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과 참여란 단순한 재능기부나 공간 공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술가 스스로 (적어도 자신의 개인적 미적 표현 행위가 아닌 한) 뚜렷한 목표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여’의 가치를 내장하고 그에 따른 예술 실천 활동과 사회적 연대에 개입해야 한다. 그럴 때에 예술을 통한 사회적 참여 및 그에 따른 ‘소득 보상’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하는 것 역시 단순히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이 구체적인 정책 즉 “예술인의 최저 생활 보장, 작업 과정의 민주화, 지역사회와의 결합 등으로 이어진다면 예술백신을 통한 진정한 사회적 방역의 가능성이 타진”<sup>4)</sup>될 수 있다.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은 “새로운 감각의 경험과 정서적 만족을 넘어서 사회적 역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

---

4) 정윤수, ‘코로나 최종 방역, 문화안전망과 예술백신’, 강원도민일보 2021년 11월 19일자 기고문

예술의 사회적 활동”(윤소영 외, 2020:23)이 되기 때문이다.

### 3. 참여소득 성격의 사업과 정책

서두에 밝힌 것처럼 이 연구는 참여소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의 성격을 지닌다. 아직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은 개념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모색을 위해 치밀한 이론적 탐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그 가능성의 씨앗을 판별할 필요성 또한 있다.

거칠게 말하여, 참여소득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조건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소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서 참여소득의 개념 및 의의와 관련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의 확장과 강화를 모색한다면, 특정 개념의 기계적 접목보다 훨씬 풍부하고 의미 있는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 3.1. 문화도시 사업과 참여소득

참여소득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2022년 상반기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평가 지원을 하여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최대 100억 원(=100억 원 지자체 매칭)을 지원한다. 2022년 4월 현재 총 18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선정

되었고 16개 도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문화도시’의 개념이 정책적으로 처음 제기된 2013년이다. 이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자주 활용된 단어는 ‘즐거는 도시’, ‘효과 창출’, ‘지역 발전’ 등이었는데 이후 ‘공유’, ‘공존’, ‘다양성’ 등의 개념 및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이 전개되었다. 이 비전(또는 슬로건)의 변화는, 단지 그럴 듯한 수식의 교체가 아니라, 자율과 자생의 지역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의 참여를 촉진해온 결과이다.

문체부의 2018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 공동체활성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구축, 사회혁신 체고”<sup>5)</sup>이며 그것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 조성과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적 소프트웨어(인력, 콘텐츠)가 사회발전과 연결되는 도시 문화생태계 조성”<sup>6)</sup>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시민, 행정, 문화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공론하고 협치하는 거버넌스로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바탕으로 사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인 그룹과 기획 및 실행업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전문가 그룹”<sup>7)</sup>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전국의 도시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가이드’한 바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생태계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그것이 선정 평가의 주요 항목이지만 동시에 바로 그것, 즉 자율적이며 자생적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이란 바로 그 문화예술 생태계의 형성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18년 5월, 3쪽

6) 문화체육관광부, 위 가이드라인, 4쪽

7) 문화체육관광부, 위 가이드라인, 4쪽

문화도시 선정 결과를 보면, 화려한 수식이나 각종 이벤트를 제시한 도시들은 대체로 탈락하였고 눈에 띄는 스펙터클 사업 대신 주민 자치 기반의 문화 주체 형성을 제시한 후보 도시들이 대체로 선정된 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최종의 결과물보다는 그 ‘주체의 형성과 협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주체의 형성’이란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단적인 예로 강릉은 “문화 전문인력 및 일반 시민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프로그램, 인문 프로그램, 문화예술 강사 풀 등을 포괄”<sup>8)</sup>하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제안 및 실천하고 있으며 부산 영도구도 “도시문화기획자와 마을기획자 양성을 통해 영도 문화도시 추진의 창조적 인력 양성과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sup>9)</sup>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총괄적 차원에서 문화도시 사업은 기존의 단기 용역 사업에 비하여 그 사업의 규모와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장기적이고 상향식 사업 설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즉 그 행위자가 지속가능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혹은 그것의 미래지향적인 작업 안정성이 담보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다.

문화도시 사업이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대체로 해당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그 실행 주체는 일정 기간 이상 지역문화 사업을 전담해 온 독립 전문가 또는 그 단체와 연관하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고유 업무를 고려하여 문화도시

---

8) 강릉시, <강릉 문화도시 조성계획>, 2021년 1월, 18쪽

9) 부산시 영도구,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2020년 6월, 13쪽

에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PM(Project Manager)으로 선임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PM의 계약 관계는 통상 2년 이내이고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교체 또는 해촉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지자체가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PM 개인의 활동은 중단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을 현장에서 관찰한 최정한은 “탈락 도시들은 무대에서 내려와 쓸쓸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최소 1년, 길게는 수년간 문화도시 지정에 매달려온 시민주체, 문화기획자, 예술인들이 한순간에 목표를 상실하고 흩어질 우려”(최정한, 2021)가 있다고 썼다.

이를 좀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문화사업 및 법정 문화도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일들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때 그 당사자 및 관련자들은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일종의 안위와 보신을 고려하게 된다. 이를 장석류는 ‘좀비화’라고 비유하면서 “인사권을 통해 끊임없이 관리자를 교체하면서, 서로를 물어뜯게 하는 아비규환의 상태”(장석류, 2022)로까지 전개되는 각 문화재단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였다.

문화도시 사업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 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사업 설계의 세부 내용,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각종 세부 사업들은(장르 특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문 예술인들의 사회적 실천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의 대우와 보상 체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행위자, 즉 예술인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방금 언급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기획자와 참여 예술인들의 사회적 생존과 직업 안정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2022년 4월 현재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18개 도시의 사업들에서 전문 기획자와 예술인의 사회적 참여와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바, 이를 참여소득의 관점에서 강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 3.2. 예술인 지원정책과 참여소득

위와 같은 현황이 개별 지자체의 지원사업에서도 확인된다. <광주 매일신문>은 2020년 4월 8일자 기사에서 ‘광산시민수당’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이 “광산시민수당과 연계한 공연소득, 수당 등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썼다. <한겨레신문>도 2021년 5월 29일자 특집 기사 “통영시, 참여소득 실험의 심장이 되다”에서 통영시 용남면의 주민 활동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복원, 노인 돌봄”의 성과를 거뒀다고 썼다.

이러한 사실들에 주목하여 학계 일부에서는 참여소득을 “시장가치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sup>10)</sup>으로 평가하거나 “시장과 기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서비스로 ‘시민’의 성격을 형성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시민권을 배양”<sup>11)</sup>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의 전개 양상을 볼 때, 2022년 1월 5일, <김해문화재단>이 추진한 예술인 지원정책 ‘불가사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유의미하다. ‘김해예술인이 어블러 맹구르는 질거운 판’이라는 부제의

---

10) 홍기빈(경제학), ‘참여소득제에 주목하자’, 경향신문 2021년 3월 6일자, 기고문

11) 이승윤(사회복지학), ‘참여소득제의 가능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1년 4월 19일 세미나 발표문, 11쪽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관리자 중심의 공간’ 지원에서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공간’ 지원으로 전환하여 “김해예술인 활동 진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술활성화와 김해예술인 동반 성장 구현”<sup>12)</sup>을 목표로 한다. <김해문화재단>이 2021년 지역예술인과 가진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토대로 준비한 것으로 기존의 지원 시스템을 다음의 네 가지 목표 즉 △단발성에서 축적성 지원으로, △경쟁에서 경험 구조로, △관리에서 지원 구조로, △제공형에서 제안형 지원으로 등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사리 프로젝트’가 제안된 것이다.

위의 네 가지 목표 설정에 따라 ‘불가사리 프로젝트’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 순서별로 지원하되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차년도로 그 순위로 자동 승계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대체로 ‘공모-서류심사-발표심사-선정(탈락)-수행(재신청)’ 등으로 전개되는 ‘수월성’ 위주였던 것에 비하여 ‘불가사리 프로젝트’는 “경쟁이 아닌 상생하는 방식으로 예술인 지원 사업을 한다는 발상의 전환”<sup>13)</sup>이라는 점에서 현장 예술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시도는, 크게는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공모 경쟁’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것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4)</sup> 2021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경희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가 복잡해 예술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공모

12) 김해문화재단, ‘2022년 김해예술인지원사업 불가사리 프로젝트 공모 안내’, 2022년 1월 7일자 공고문

13) 박정연, ‘김해, 올해부터 심사없이 예술인 지원’, <경남도민일보>, 2022년 1월 7일

14) 단적인 예로 <서울문화재단>은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를 발표하였다.

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청 서식 간소화, 공모지원 규제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5)</sup>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두루 감안할 때 ‘불가사리 프로젝트’의 추진과 그 결과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단위 사업에 제한된 의미를 넘어 향후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서로 다른 경로와 개념을 통해 전개된 것이지만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창작수당, 예술인 기본소득 등이 활발히 논의되거나 실현된 것도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관계망의 축진에 참여하는 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는 바, 이는 예술인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복지 수요자이자 사회관계망을 축진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참여소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가 2021년 7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통하여 도내 거주 예술인에게 예술 활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행정 근거를 확보하는 등 예술인 지원 정책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4.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과 예술노동의 재인식

##### 4.1.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

이렇게 참여소득이 사회 전반은 물론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그 개념이 자의적이고 기존 사업에 대해 다소 주관적 의지로 명명한 경우가 없지 않으며 여타 지

---

15) 이성오, ‘예술인 지원한다며 지나치게 복잡한 공모서류, 브로커까지 등장’, <고양신문> 2021년 11월 9일

원사업과의 관계 속에서 개념의 명확화와 작동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022년 현재 상황에서, 참여소득을 축대로 한 지역문화 정책을 두루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년의 ‘도시재생법’ 제정 및 2014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어 각 지자체는 ‘문화재단’을 신설 또는 증설하였다. 이 기관들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자체장 및 기관장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정치의 과당에 따라 “기존의 관료제 틀 내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듯 문화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일주의와 형식주의”(최경미, 2017:17)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료적 관리·감독에 의해 문화예술인들이 ‘수직 계열화’되고 그 사업이 ‘용역외주화’ 되는 현상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참여소득의 현실적 필요가 확인된다. 문화예술인의 장기적인 사회적 참여와 그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을 기본으로 하는 참여소득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문화예술 민/관협치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실무 행위 주체의 민주성이 담보되고 그리하여 해당 지역 내의 상호 관계망이 촉진된다면 참여 소득의 안정적인 현실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때 그 사업 방향은 기존의 수월성 위주 공모 지원 사업이나 긴급 구난 성격의 일회적인 지원과는 그 차원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 또한 ‘상향식’ 정책 목표와 ‘하향식’ 사업 구조의 모순이 작동한다. 협력자이자 동료인 행위 주체들이 ‘사업 공모’에 의하여 경쟁관계로 재편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화재단을 포함한 행정 단위의 전문가들은 고용과 작업을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지만 수많은 행사와 프로젝트와 회의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사업의 각 부

분에 결합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불안한 상태의 불연속적인 참여에 그치게 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작곡가, 무대 감독, 가수 등 대중음악 종사자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67,592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인의 예술활동과 그 가치에 대하여 대다수가 사회적 가치를 인식(85.5점)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활동 할 의향(81.5점)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예술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61.2점)”고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괴리감과 더불어 지원 신청 및 정산 과정이 복잡해서 공공지원 사업 신청을 꺼린다고 답하였다(신상욱, 2021:19).

이런 점에서, 참여소득에 대한 검토는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판단은 물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요약되는 가까운 미래의 급격한 사회 변동에까지 폭넓게 펼쳐진다.

이를테면 기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대체로 “지원제도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장단계별 특성이 배제되어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에 제약”(하동균 외, 2021:78)이 되고 있으며 “기존 장르가 해체되고 장르 간 혼합, 새로운 장르 출현 등 다양성이 가미된 문화예술의 범장르적 추세”(윤지경 외, 2020:42)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분류 체계 및 소수의 수월성(elitism -excellence) 위주의 지원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르 중심 편제를 유지하더라도, 대체로 지자체나 공공 기관의 문화 사업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 활동을 공적 지원 체계 내에 별도의 트랙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2. 예술노동과 참여소득

예술 노동에 대한 적극적 평가가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다. 예술인 지원 정책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적극적 평가는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예컨대 예술인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예술활동은 특정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극적 활동을 넘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이며 공적인 주요한 활동”(김성하, 2021)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차원의 개념 공유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까닭은 예술 활동에 관하여 ‘개인이 좋아서(고생도 스스로 선택한) 하는 지극히 사적인 행위’라는 정도의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예술을 ‘공적인 주요한 활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멈추면 예술가의 활동이 일정한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공적 활동’이라는 범위에 고착화될 수 있다. 그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예술 활동(창작물의 산출에 필요한 연구, 조사, 작업 등 제반의 과정)이 여타 직업군의 일반 노동과 다르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활동 또는 공적인 행위 정도로 국한되면 그것은 시혜의 대상이 되거나 특정한 공적 활동에 대한 일시적 보상에 그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창조도시’, ‘문화도시’, ‘인문도시’ 등의 사업에서 예술가들은 ‘공적인 활동’을 평가받아 참여해왔으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각 사업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수직계열화의 하층에 흡수되어 도시 “스펙터클의 생산에 연루”(권범철, 2019:49)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때 (특히 청년)예술인들은 “그들의 활동은 분명 노동이지만 예술의 숭고화

와 함께 그것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에 의존”(권범철, 2019:40)하고 있다. 예술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와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문화예술인이 민간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국가(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스 애빙(Hans Abbing)이 지적한 것처럼 “고독하고 가난한 천재,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예술가라는 신화화된 예술가의 상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예술가에게 직업적 윤리를 과도하게 요구”(오경미, 2018:41)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예술가들이 자신의 본업을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외적 활동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적 활동을 ‘예술가의 공적 활동’으로 축소하지 않고 일반적 의미의 ‘노동’으로 확장할 경우 그 행위의 사회적 합의와 공적 신뢰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때 ‘예술 노동’은 그 자체로 존중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평가되고 정산될 수 있다.

되풀이하여 강조하건대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급한 대로 긴급 지원자금을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는 문화예술계인들의 ‘사회적 생존과 안정적인 작업’, 즉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요약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동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압축되는 비상사태의 장기화라는 악조건에서 보다 발전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보장·제공과 더불어 지역 사회통합의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자본 활성화”(김정훈·최석현, 2018:121)를 핵심으로 하는 참여소득은 문화예술계의 지속가능성한 생태계 조성 and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라는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

## 5. 결론 : 한계와 제언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장시간 노동, 자살률 등 슬한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은 비단 예술가 개인의 사회적 생존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공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소득을 새로운 가능성의 하나로 검토하였다.

참여소득은 아직 ‘형성 중’에 있는 개념이다.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양자는 보완적인가 대립적인가,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한 과정인가? 등의 논점이 있다. 또한 참여소득을 실시할 경우 재원의 형성, 수급의 범위, 참여의 성격과 항목 등 구체적으로 판별해야 할 사안이 상당하다. 그것을 각각의 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탐색하지 못한 것이 이 연구의 한계다. 이는 연구자의 한계이자 동시에 참여소득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기본소득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여 진영 간 찬반 사안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그 의의와 방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외적 요인 또한 있다.

그럼에도 참여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해당 예술인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현 공모제 중심의 지원 및 긴급 자금 수혈 형태의 지원으로는 예술가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기존의 수월성 위주 공모 사업을 폐기하기도 쉽지 않다. 장르 중심의 공모 지원은 예술계 내부의 의미 있는 긴장과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한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지원 정책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필수 개선 사항을 고쳐나가되 그와 별개로 참여소득 성격의 지원 방식을 전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2022년 4월, 새로운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공개 포럼에서 성연주는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은 ‘장르 중심’과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별도의 트랙’을 모두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성연주, 2022:5)한다고 주장하였거니와 이 ‘별도의 트랙’을 참여소득이라는 예술인의 사회적 실천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되풀이하여 강조하거니와 예술의 사회적 참여란 “정서적 불안, 우울증, 소외감, 현실 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성 약화,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문화예술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박순보 외, 2018:235)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자신의 과제로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보면 이미 수많은 예술인들이 문화민주주의 확산, 지역의 일상 문화 커뮤니티 형성, 사회 각 분야의 관계망 촉진 등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실천이 전개하고 있다.

이를 참여소득이라는 관점에서 그 노동의 의미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속한다면 각 지역과 각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헌신성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예술인들의 사회적 생존과 직업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참여는 고사하고 사회적 진입 자체가 어려운 청년 예술가들에게 참여소득은 사회적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노동성에 대한 적극적 인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의 새로운 활력과 저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소득이라는 낯선 개념을 현실에 억지로 산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가능성이 확인된 실천들을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으로 확인하고 확장하고자 한 이 연구가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과 사회적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 박순보 외, 2018,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예술지원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신상욱 외, 2021,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옥동석, 2021. 「기본소득제 해외문헌 고찰」, 한국재정정책학회
- 윤소영 외, 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지경 외, 2020, 「문화예술지원방식 다변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존 앳킨슨, 2015, 「불평등을 넘어 -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경덕역, 글항아리
- 하동균 외, 2021, 「코로나대응 예술현장의 위기인식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202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2. 학회지 논문

- 권범철, 2019,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 창조도시 전략과 예술 행동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권 3호, 49쪽
- 김정훈 · 최석현, 2018, 「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에 관한 소고」, <지역발전연구> 27권 3호, 121쪽
- 안영희, 나진주, 2020, 「실용음악 예술인의 현황과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코로나(COVID-19) 사태를 겪는 부산지역 실용음악 예술인 대상으로」, 한국대중음악학회, 통권 25호

- 양혜원 외 (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정책연구>, 38쪽
- 오경미, 2018, 「예술노동 논쟁 재고찰 : 철학적 개념 논쟁을 넘어 현장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8권, 41~42쪽
- 이슬기 · 금현섭, 2017, 「예술인의 소득 지위와 격차」, <예술경영연구> 제 41집, 19쪽
- 이썬정석, 2016, 「음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과제: 뮤지션유니온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니온 교육정책팀장), <대중음악> 통권 18호
- 조남경, 2017, 「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사회보장연구> 33권 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63쪽
- 정윤수, 2020, 「마을벽화로 본 지역문화정책 비판적 고찰」, 지역과문화, 제7권 제3호, 94쪽
- 최경미, 2017, 「지역문화재단에서 나타는 관료중심주의에 대한 연구」,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11쪽

### 3. 신문과 잡지 기사

- 김동훈, <생활고 겪는 시민활동가의 버팀목 될게요>, 한겨레, 2013년 4월 23일
- 김성찬,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재공고>, 뉴시스 2020년 12월 8일
- 김성하, <예술인 기본소득 가능성과 한계>, 예술경영, 2021년, 465호
- 박정연, <김해, 올해부터 심사없이 예술인지원>, 경남도민일보, 2022년 1월 7일
- 이성오, <‘예술인 지원한다며 지나치게 복잡한 공모서류, 브로커까지 등장’>, 고양신문, 2021년 11월 9일
- 이지은,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복지이슈 기본소득 특별호, 2020년 7월호
- 이상준, <참여소득, 캐피탈리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민과세계, 2021년 6월호
- 장석류, <준비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조직은’>, 서울문화투데이, 2022년 4월, 13일

정윤수, <코로나 최종 방역, 문화안전망과 예술백신>, 강원도민일보 2021년 11월 19일자

최정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 2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부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문화정책리뷰, 한2021년 국문화정책연구소, 2021년 1월 20일

#### 4. 기타

김해문화재단, <2022년 김해예술인지원사업 불가사리 프로젝트 공모 안내>, 2022년 1월 7일자 공고문

문체부, 2020, 제3차 추경 예술인 지원 보도자료

성연주, <예술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제안 : 예술의 현재성을 반영한 오픈트랙 도입을 중심으로>, 2022년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개 포럼 발표문

## A Preliminary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Artist Support Policy and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come

Jeong, Yoon Soo  
(Sungkongho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come as one of the new artist support policies. Participation income is a policy that has not yet been realized, and there is ongoing debate about its concept and fea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which seeks new possibilities for participatory income and artist support policies, has the character of a preliminary study.

Existing support policies need to be improved in two aspects. First of all, after the COVID-19 situation, the culture and arts sector, which presupposes face-to-face contact, is in crisis.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implemented emergency support policies, but these only had a temporary effect. A more sustainable support policy is needed. In addition, the existing competition selection support policy centered on excellence has problems such as customary genre classification, limited work period, result-oriented nature, and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cept of art according to social change, social practice of art in response to social crises, and social recognition for the work of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public art field.

This study reviewed the cultural city project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experimental artist support project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some institutions,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participatory income. Although it is a study with limitations in the specific policies and methods of participation income, it is believ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a significant amount of productive discussion to explore various possibilities

of the new artist support policy.

Key words : Participation income, Basic income, Artist support policy, Sustainability,  
Social value

논문 투고일: 2022년 4월 20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2년 5월 22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30일